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53,256,990	22,597,710
일반회계	726,959,290	21,808,779
특별회계	26,297,700	788,931
공기업특별회계	24,352,635	730,579
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	24,352,635	730,579
기타특별회계	1,945,065	58,35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60,642	31,819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884,423	26,53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351,48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2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(간주처리)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·특별교부세·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